

공유재산 (청사부지)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

■ 제안이유

-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- 동 규정에 따라 1999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 (화정2동 청사 부지)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■ 주요골자

- '85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신축한 화정2동 청사가 노후, 협소하여 동민의 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신축을 위해 100평 규모의 부지를 화정2동 관내에서 선정하여 매입코자 합니다.

■ 검토보고
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 분석하도록 하였음.
- 현 화정2동 청사는 1985년도에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준공된 115평 (1층 72평, 2층 43평) 규모의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
-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해오던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또는 정보제공 등 동민의 집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,
- 복지시설 기능과 생활정보서비스 등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 참여와 대화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